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
의
장

제1973호 2026.1.26.(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호 가좌동 19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4차)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5호 태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9호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및 행위제한 고시 ——— 8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4호 연희공원 특례사업 부출입구 연결도로(소1-331호선) 신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 1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5호 가좌동 207번지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공람공고 ——— 1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2호 도시관리계획(마전·블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수정) ——— 16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11호

가좌동 19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4차) 고시

가좌동 19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4차)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명칭: 가좌동 19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97번지 일원
- 나. 면적: 6,580.6m²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미정
- 나. 준공예정일: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가. 조합명칭: 가좌동 19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석)
- 나.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85, 410호

5.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내용

- 조합 임원 연임(조합장, 이사, 감사)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15호

태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22번지 태화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22번지
- 나. 면적 : 10,183㎡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직책	성명	주소
1	위원장	김*성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95번길 6, *동 4**호
2	감 사	이*호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95번길 6, *동 4**호
3	부위원장	남*명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95번길 6, *동 1**호
4	추진위원	임*숙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95번길 6, *동 3**호
5	추진위원	김*선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95번길 6, *동 5**호
6	추진위원	박*철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95번길 6, *동 2**호
7	추진위원	김*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95번길 6, *동 2**호
8	추진위원	이*현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95번길 6, *동 4**호
9	추진위원	박*용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95번길 6, *동 4**호
10	추진위원	심*섭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95번길 6, *동 1**호
11	추진위원	김*의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95번길 6, *동 1**호

12	추진위원	박*임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으로 95번길 6, *동 2**호
13	추진위원	김*옥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으로 95번길 6, *동 2**호
14	추진위원	문*옥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으로 95번길 6, *동 1**호
15	추진위원	이*석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으로 95번길 6, *동 2**호
16	추진위원	김*자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으로 95번길 6, *동 4**호
17	추진위원	박*수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으로 95번길 6, *동 4**호
18	추진위원	김*선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으로 95번길 6, *동 2**호
19	추진위원	권*이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으로 95번길 6, *동 1**호
20	추진위원	조*매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으로 95번길 6, *동 1**호
21	추진위원	이*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으로 95번길 6, *동 2**호
22	추진위원	최*식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으로 95번길 6, *동 1**호
23	추진위원	최*순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으로 95번길 6, *동 2**호
24	추진위원	이*윤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으로 95번길 6, *동 5**호
25	추진위원	최*수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으로 95번길 6, *동 3**호
26	추진위원	장*영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으로 95번길 6, *동 2**호

3. 토지등소유자의 수

: 234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함.)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1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422번길 8(검암동)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1.26.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6-1-26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김왕동 649-4	인천광역시 서구 송학로422번길 8 (김왕동)	20090922	송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88-2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길 81 (원창동)	20131202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 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79-2	인천광역시 서구 솔모령이길 28 (원당동)	20200720	'솔모령이'라는 옛 지명에서 착안	
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60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395-107 (오류동)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34, 434-617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395-105 (오류동)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6-1-26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395-113 (오류동)	건물멸실	20081231	없음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19호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제한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및 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제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명 칭: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
- 나. 면 적: 36,689㎡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가. 착수 예정일 : 2027. 10.
- 나. 준공 예정일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이내
- ※ 사업추진단계시 착수일 및 준공일은 변경될 수 있음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가. 조합의 명 칭 :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무소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천마로13번길 10, 1층

5. 조합설립인가일: 2026. 1. 23.(금)

6.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가. 행위제한 구역: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과 동일

나. 행위제한 대상

-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가설건축물의 건축
-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다.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는 다음 날부터 행위제한 대상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라. 지형도면: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홈페이지 (<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44호

연희공원 특례사업 부출입구 연결도로(소1-331호선)신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연희공원 특례사업 부출입구 연결도로 【소1-331호선 / 사업명: 연희공원 특례사업 부출입구 연결 도로개설사업】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2)에 비치되었으며,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66-4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1-331호선)
 - 명 칭: 연희공원 특례사업 부출입구 연결 도로개설사업(소1-331호선)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180m²
 - 규 모: 연장 12.0m, 폭 11.7.m 교량(라멘교)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 인가일 ~ 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방법: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본관 4층 도시계획과(☎032-560-4762)
10.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토지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소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연희동	166-25	제	479	29	공	인천광역시					
2	연희동	166-47	답	315	68	공	인천광역시					
3	연희동	166-58	답	172	48	사	주택도시보증공사					
4	연희동	166-11	답	635	35	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64호

가좌동 207번지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공람공고

가좌동 207번지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경미한 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람기간: 2026. 1. 26. ~ 2026. 2. 9. (14일간)
2. 공람장소: 서구청 주택과(서구 서곶로 323, 3층),
가좌동 207번지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사무실
(서구 원적로 85, 우신프라자 410호)
3. 공람내용: 조합설립인가(변경) 관계서류
4. 의견제출: 공람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신청내용
 - (1) 사업명칭: 가좌동 207번지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 (2) 위치: 인천광역시 가좌동 207번지 동남아파트
 - (3) 구역면적: 6,277.6m²
 - (4)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 (5) 조합원수: 143명
 - (6) 사업시행자: 가좌동 207번지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조합장 이흥기)

(7) 변 경 내 용: 조합임원 변경
대의원 변경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82호

도시관리계획(마전 · 불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 · 열람(수정)

도시관리계획(마전 · 불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도시관리계획(마전 · 불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마전지구 면적 증가 607,143.1㎡ → 608,549.1㎡ 증)1,406㎡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대한 결정(변경)

- 마전지구

① 녹지

· 경관녹지 결정(안)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녹지	경관 녹지	마전동 산34-4일원	-	증)1,406	1,406	-	

· 경관녹지 결정(안)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경관 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1,406㎡	○ 절토사면의 경관 ·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경관녹지로 조성하고자 함

②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안)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가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 공지	공공 공지	마전동 1125-1 일원	-	증) 513.5	513.5	-	

· 공공공지 결정(안)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공공 공지	○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513.5㎡	○ 장래 개발계획(가현천 생태환경 조성사업)과의 연계추진에 따라 해당부지를 공공공지로 조성하고자 함

- 불로1지구

① 공원

· 공원 결정(안)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가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 원	소공원	불로동 769-3 일원	-	증)1,073.4	1,073.4	-	

· 공원 결정(안)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공원	○ 공원 신설 - 면적 : 1,073.4㎡	○ 주민들의 휴식 및 운동 등 생활 녹지공간과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위한 소공원 신설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마전지구 가구 및 획지 결정 조서(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m ²)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m ²)					위치	면 적(m ²)		
B-3	1	13,927.7	1	12,355.5		B-3	1	15,333.7	1	12,355.5		
A-1			3	513.5		공공 공지			3	513.5		
녹지2			4	504.1		녹지2			4	504.1		
녹지1			5	554.6					녹지1	5		554.6
									녹지3	6		1,406.0

- 불로1지구 가구 및 획지 결정 조서(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m ²)	면 적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m ²)	면 적			비 고		
			위치	대지 면적 (m ²)	획지 면적 (m ²)					위치	대지 면적 (m ²)	획지 면적 (m ²)			
A-1	8-1	2,583.5	1	472.6	472.6		A-1	8-1	1,510.1	1	472.6	472.6			
			2	690.6	-					2필지 분할가능	2	-		-	
			3	382.8	382.8						3	-		-	
			4	767.4	-					2필지 분할가능	4	767.4		-	2필지 분할가능
			5	270.1	270.1						5	270.1		270.1	

-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마전지구 - 면적 증가 607,143.1m ² → 608,549.1m ² (증)1,406m ² - 경관녹지, 공공공지 신설 - 단독주택용지 → 공공공지 · 불로1지구 - 소공원 신설 - 단독주택용지 → 소공원	·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장기 미매각 체비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며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재검토를 통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도시관리 계획 수립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II.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III. 수정사항

○ 토지이용 및 시설에 대한 결정(변경) 상세내용 변경

- 조서 8p 신설 경관녹지 부분 주소 변경(마전동 1125-1 일원 → 마전동 산34-4)
- 조서 9p 신설 공공공지 부분 주소 변경(마전동 산34-4 일원 → 마전동 1125-1)

IV.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2, 서구 서곶로 307)

V.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